

신입사원 채용시험 조정점수 안내¹⁾

사무직 및 기술직 중 토목직무, 전기직무 응시생들은 전공과목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점수제를 시행합니다.

조정점수란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변환한 점수로, 과목간 난이도에 따른 점수 차이를 보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높은 과목의 경우 평균이 낮으므로 조정점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난이도가 낮은 과목은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정점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4항 [별표13]

$$\left\{ (\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div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 \right\} \times 10 + 50$$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계}}{\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참고로, 선택과목이 도입된 대부분의 국내시험들도 동일한 산식에 의해 조정점수를 산출합니다.

※ 대학 수능시험('99년 도입), 공인노무사('11년 도입), 국가공무원 8, 9급('13년 도입)

조정점수제 Q&A

1. 과락기준(만점의 40% 이상)은 어떻게 정하는지?

-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 이상일 경우(40점 이상) 과락을 면한 것으로 봅니다.
- 사시, 노무사 시험도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40점 이상일 경우이면 과락이 아닌 것으로 인정

(예시) 경영학 : ① 원점수(35점), 조정점수(41점) → 과락 아님
 ② 원점수(40점), 조정점수(37점) → 과락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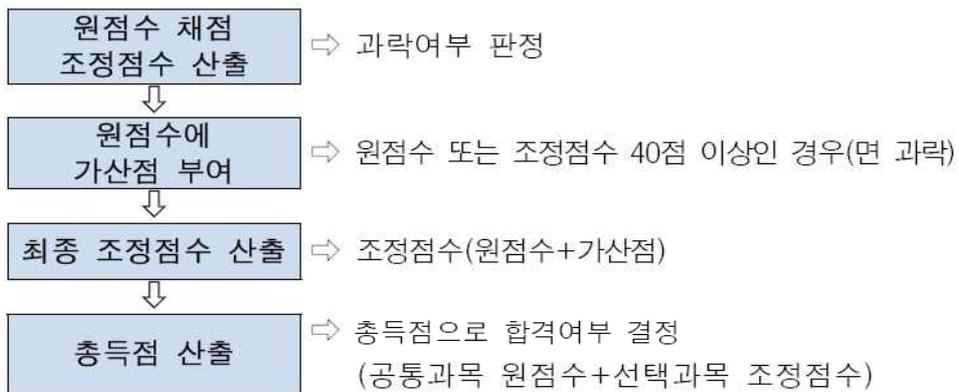
2. 가산점 부여시기 및 부여 절차는 ?

- 원점수에 먼저 가산점을 더한 후 이를 조정점수로 전환해 최종 성적을 산출합니다.
-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전환한 후에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과목간 가산점이 상이하고, 과목내 원점수 순위가 변동되는 문제 발생(조정점수를 도입하더라도 과목내 순위는 동일해야 함)

< 예 시 >

구분	원점수 (가점) A	순위	원점수+가점 ⇒조정점수 B	순위	원점수 ⇒조정점수+ 가점 C	순위
가	91(1)	1	67.76	1	68.82	2
나	90(0)	2	67.33	2	67.82	3
다	85.5(10.5)	3	65.40	3	71.77	1

- 원점수에 먼저 가산점을 더한 후 조정점수로 전환하는 B의 경우 원점수와 순위는 동일,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전환한 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C의 경우는 순위 변동
- 가산점 부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조정점수 산출시 원점수 100점이 70점이 되는 등 점수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 조정점수는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 상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으로 조정점수의 크기는 과목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따라서, 조정점수 산출시 반드시 점수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며, 평균, 표준편차, 개별 수험생의 성적에 따라 상승할 수 있습니다.